

노인장기요양보험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1

2021. 11.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에 따라 인력을 배치·운영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고 함) 제48조(인력배치기준)에 따라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24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영양사(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및 조리원(입소자 25명당 1명)을 배치하여야 하고 다만,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위 법령 및 규칙 등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엄격히 준수되어야 함.

따라서 고시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제1항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위반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여비용은 결원 수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또는 계약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1 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 전담실 은2명당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1명 (1회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1 명 추가)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사례1

- 현원이 65명인 ○○요양시설은 인력배치기준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직원의 배치기준' 규정대로 영양사 1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함. 다만,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당기관은 위탁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것으로 지자체 및 공단에 신고를 하였음. 00지자체 주관 공단의 지원으로 ○월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급식업체는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은 업체로 확인되었음.

○○요양시설은 1년 동안 정상적으로 급식을 위탁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월에 가산비용을 환수하였음.

사례2

- △△노인시설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현원 90명에 대해 급식을 제공해왔으나 기간 중 영양사 1명, 조리원 3명(입소자 25명당 1명)만 배치하여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부당기간 동안 조리원 감산규정을 적용하여 해당월 급여비용에서 10% 감산 및 해당월 가산비용을 환수처리 하였음.